

시민이 행복한, 자랑스러운 정읍
Happy Citizen, Proud Jeongeup!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

정 읍 시
산림녹지과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1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고부	입석	산21	임	269,968	25,000	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49	행주은씨탕정공파중중

3. 피 해 유 형 : 산사태

4. 지 정 사 유 : 급경사 지역이며 과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하단부 사찰(보문사)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어,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관리예방대책으로 산지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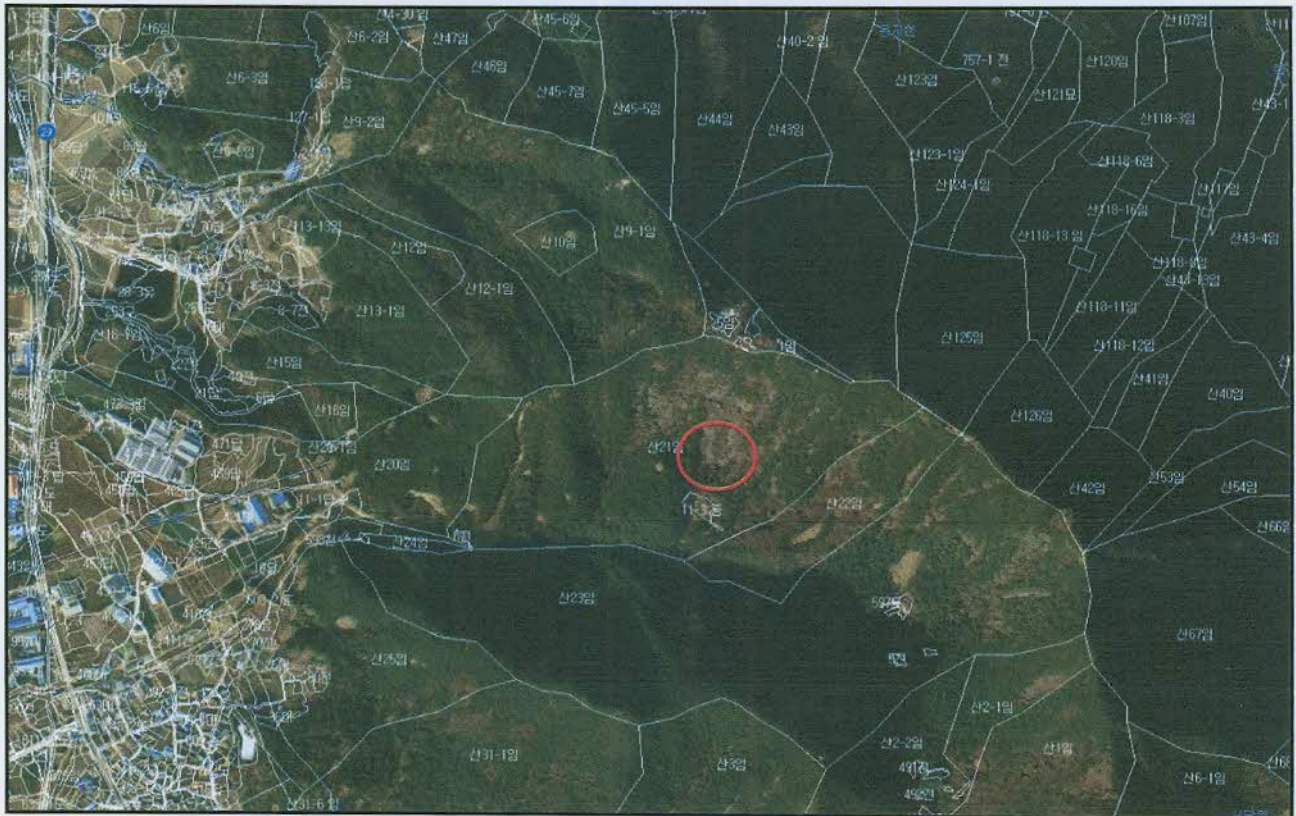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2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입암	단곡	1077-4	구	3,477	219		국(농림부)
정읍	입암	단곡	산17-1	임	2,221	560	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142-1	안길곤
정읍	입암	단곡	산18	임	3,074	120		고치삼
정읍	입암	단곡	산16-3	임	11,107	980	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202-2미동@10동 508호	안충영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계류하단에 주택 10여채(왕심마을)가 있으며, 계류가 불안정하여 황폐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4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신월		101	대	414	30	정읍시 신월동 219-1	김영상
정읍	신월		102	답	2,162	69	정읍시 신월동 146-1	서한석
정읍	신월		74	답	3,660	213	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동 575	김재원
정읍	신월		849-30	구	42,507	1,510		국(농수산부)
정읍	신월		72	전	469	26	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-3	재단법인천주교
정읍	신월		산203	임	2,579	23		전주교구유지재단
정읍	신월		57-2	답	843	1	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4 주공@ 607-508	김경숙
정읍	신월		103	답	651	10	정읍시 신월동 107	서석주
정읍	신월		64	답	7,167	216	정읍시 신월동 107	서석주
정읍	신월		65	전	102	39	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동 575	김재원
정읍	신월		70	전	2,271	199	정읍시 신월동 108	김진웅
정읍	신월		71	답	417	137	정읍시 신월동 148	차일천
정읍	신월		57-3	전	1,094	225	정읍시 신월동 138	차일천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주택 10여채(신성마을) 이상 있으며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상, 계류내 전석이 20~30%이고, 계류경사가 급하여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가 필요하며 예방관리대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5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입암	마석	334	전	228	79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5-1	남공희
정읍	입암	마석	335	전	321	81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5-1	남공희
정읍	입암	마석	산26-6	임	992	203	대전시 동구 가양동 179-5	남성준
정읍	입암	마석	산26-5	임	4,860	238	인천시 서구 가정동 519-5	남기철
정읍	입암	마석	산26-1	임	12,198	270	정읍시 시기동 506-14 현대@ 102-1101	남태호
정읍	입암	마석	산93	구	298	223		국(농림부)
정읍	입암	마석	산25	임	52,760	662	정읍시 시기동 506-14 현대@ 102-1101	남태호
정읍	입암	마석	482-1	구	2,479	463		국(농림부)
정읍	입암	마석	329	전	182	1	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327-1	김형봉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 보호대상은 농경지이나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상, 계류 내 전석이 20~30%이고, 계류경사가 급하여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6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송산		산157	구	1,091	1,091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송산		산58	임	19,240	110	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3-7	김년수
정읍	송산		산61	임	18,985	100	광주시 북구 운암동 119-29	권명윤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주택이 10여채(송령마을) 이상이 있으며,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이상이고 계류내 전석이 10~20%인 지역으로 마을사람들이 집중호우시 불안해함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 대책으로 사방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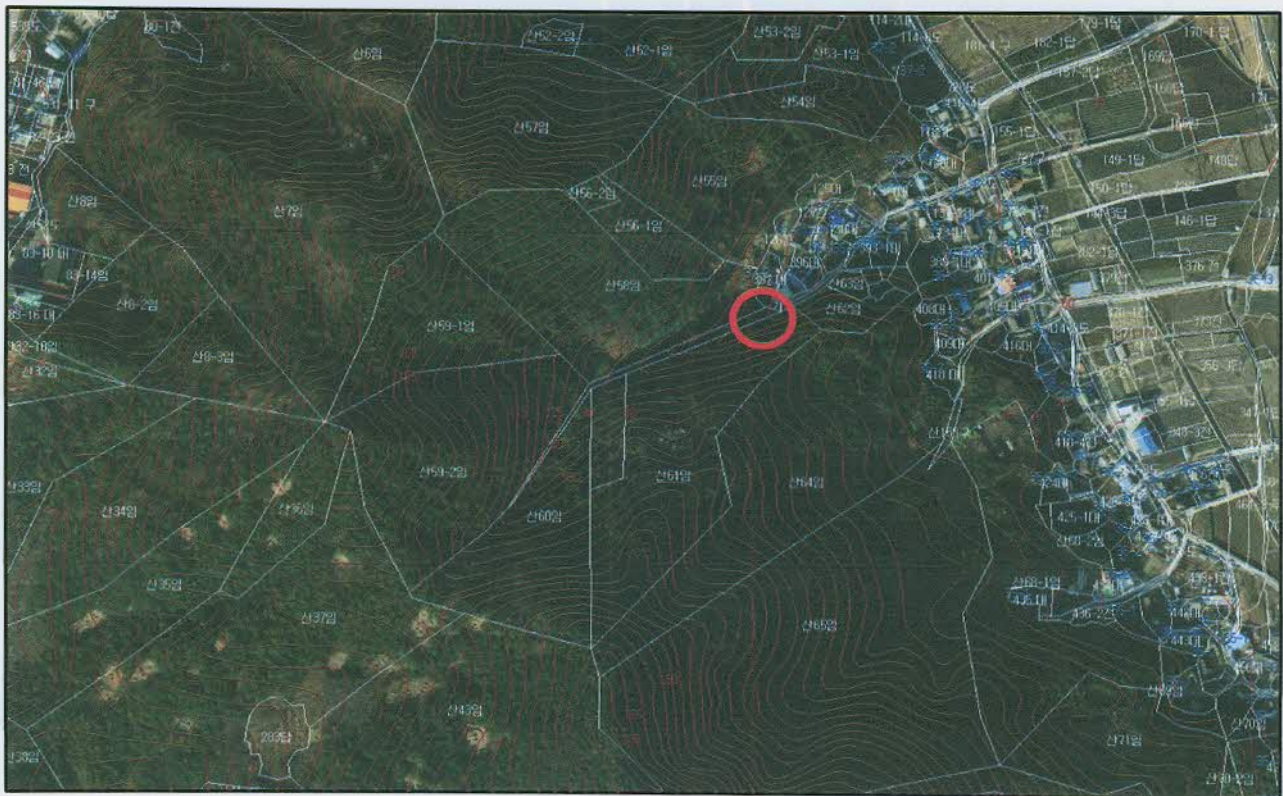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7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철보	무성	산27-1	임	63,057	16,000	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APT 112동 403호	김세준

3. 피 해 유 형 : 산사태

4. 지 정 사 유 : 산사태 위험 1등급지역으로 임연부에 묵동마을이 있어,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 대책으로 산지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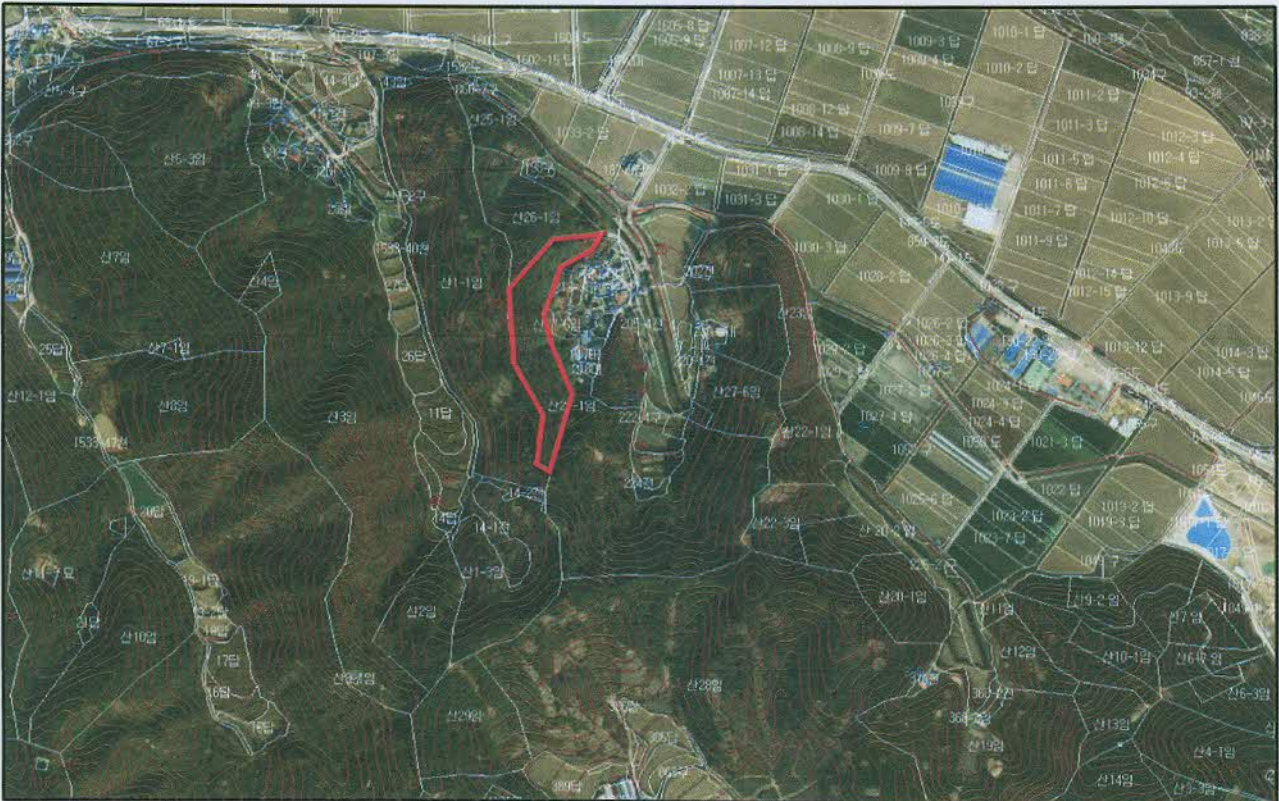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8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웅동	상산	산14-1	임	79,339	56,800	서울시 은평구 구산동1-16	김정영
정읍	웅동	상산	산14-2	임	23,207	17,990	서울시 은평구 구산동1-16	김정영
정읍	웅동	상산	산14-3	임	9,719	9,719	정읍시 웅도면 상산리 710-2	강갑성

3. 피 해 유 형 : 산사태

4. 지 정 사 유 : 산사태로 보호해야 할 주택이 10여채(거상마을) 이상 있고, 경사면 길이가 100m 이상 복합사면으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산지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09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부전		1153	구	19,044	11,086	국(농림수산식품부)	
정읍	부전		1077-100	구	5,406	1,044		
정읍	부전		산28-1	임	315,689	1,929	국(산림청)	
정읍	부전		산29	임	21,104	590	국(산림청)	
정읍	부전		산73	임	27,868	870	서울시 동봉구 변동 443-102 차재정	
정읍	부전		산79-3	임	14,098	180	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213-26 원명재	
정읍	부전		산80-5	임	34,198	489	정읍시 시기동 475(학교법인호남학원)	
정읍	부전		산80-9	도	7,600	102		
정읍	부전		산80-10	임	16,592	669	정읍시 시기동 475(학교법인호남학원) 국(건설부)	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운암마을이 있고,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상 계류내 전석이 20~30%이고, 계류길이가 500m이상으로 토석량과 유동력이 증가해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 예방 관리대책으로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0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산외	상두	산305	임	6,248	1,245	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70	노강렬
정읍	산외	상두	산306	임	4,165	425	군산시 오식도동 346-1	송병덕
정읍	산외	상두	산311	임	191,108	5,350	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46 김해김씨삼현파암계문중	
정읍	산외	상두	산312	임	3,669	510		김제태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개티마을이 있고,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상 계류내 전석이 20~30%이며, 계류길이는 길지 않지만 계류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,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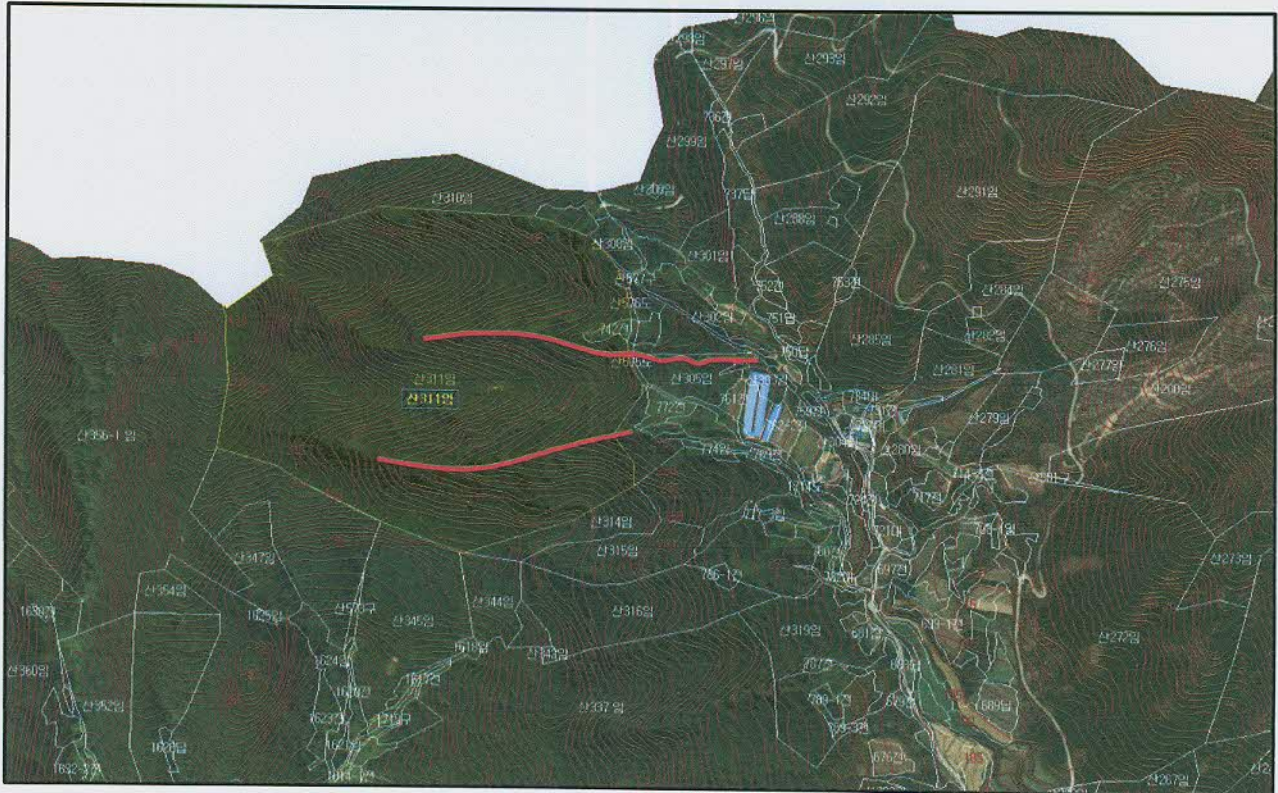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1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	
정읍	옹동	칠석	산118-1	임	13,480	2,000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6-29	엄춘태	
정읍	옹동	칠석	산119	임	29,555	480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6-29	엄춘태	
정읍	옹동	칠석	산198	구	198	198		국(농림부)	
정읍	옹동	칠석	1144	천	12,426	1,723		국(건설부)	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민가 2채(칠석마을),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상, 계류내 전석이 10~20%로 계류길이는 길지 않지만, 계류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토석류 발생시 가옥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 대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2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금봉		905-1	전	3,317	240	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24 지성빌딩-602	(유)지성주택건설
정읍	금봉		906-8	대	17,615	760		
정읍	금봉		산66	임	35,251	510	정읍시 시기동 475 학교법인호남학원	
정읍	금봉		산68	임	23,008	855	정읍시 삼산동 643	김대희
정읍	금봉		산73	임	1,785	300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37 일신건영장미APT 1004호	이공순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에 보호해야 할 공공주택(내장산실버아파트), 산사태위험 2등급이 50% 이하, 계류내 전석이 30%이상으로 그동안 집중호우로 계류내 피해가 진행되고 있었고, 유역면적이 25ha로 앞으로 집중호우로 유량이 증가할 경우 전석 등으로 인한 더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3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금봉		산203	구	496	256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금봉		1110	구	754	289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금봉		1109	구	294	294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금봉		산74	임	1,983	205	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03동 2004호 (당산삼성래미안4차@)	박정준
정읍	금봉		산75	임	1,785	300	정읍시 수성동 634-20	신승훈
정읍	금봉		산80	임	42,347	770	정읍시 수성동 634-20	신영길
정읍	금봉		산81	임	43,636	1,540	정읍시 시기동 475	
정읍	금봉		산87	임	1,388	50	정읍시 시기동 282	신영길
정읍	금봉		산88	임	81,620	498	정읍시 수성동 634-20	신영길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 보호대상은 민가 1채(금북마을)로 유역면적이 11ha 이지만, 여러 계류가 본류로 합수 되어 하단부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, 현재 전석이 30% 이상으로 집중호우로 유동성이 커지면 민가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여 예방관리 대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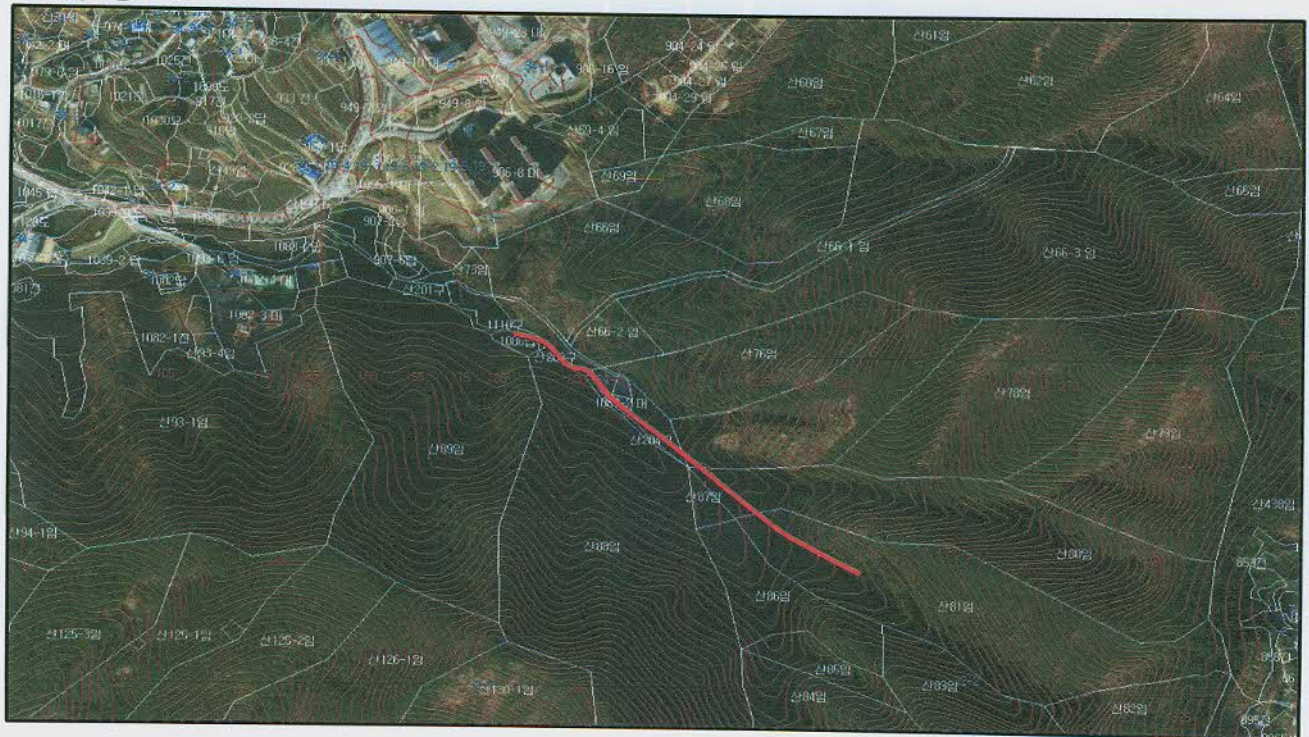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4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산외	종산	675	천	8,076	1,550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산외	종산	산277	임	2,579	67		송동면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
4. 지 정 사 유 : 토석류 보호대상은 주택 7여채(송운마을), 유역면적이 36ha로 여러 계류가 본류로 합수 되어 하단부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며, 계류내 전석 비율이 높지 않지만 계류 침식이 많이 진행되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 대책으로 계류 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
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6. 지 형 도
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1. 심 의 번 호 : 제2013-15호(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)
2. 지 정 내 역

토지소재지		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지정면적 (㎡)	소 유 자	
시	면	리					주 소	성 명
정읍	철보	백암	1260	전	8,663	212	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57-15 101동 403호 (한진신세대@)	정재용
정읍	철보	백암	1561-2	구	41,996	2,860		국(농림수산부)
정읍	철보	백암	1169	천	559	236		국(국토해양부)
정읍	철보	백암	1169-2	천	181	181		국(국토해양부)
정읍	철보	백암	산97-1	임	1,983	411		정읍시
정읍	철보	백암	산99-1	임	1,488	185	정읍시 철보면 백암리 1398	김용진
정읍	철보	백암	산99-3	임	1,388	340	정읍시 철보면 백암리 1317	정영주
정읍	철보	백암	산100	임	14,876	1,931	정읍시 철보면 백암리 1384	박종남
정읍	철보	백암	산101	임	33,421	348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4 주공@ 16동 507호	박찬곤
정읍	철보	백암	산105-1	임	45,620	492	정읍시 철보면 백암리 1405	박순옥

3. 피 해 유 형 : 토석류
4. 지 정 사 유 : 유역면적 22ha, 계류길이가 500m 이상이며, 계류 상부 여러 지류가 본류로 합수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계류침식과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계류 하부에 원백암 마을에 피해가 예상됨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며, 예방관리대책으로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.
5. 행 위 제 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6. 지 형 도

